

2017 고용·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실시 공고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의거하여 2017년도 고용·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.

1. 교육대상

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 교육을 신청한 자

2. 제출서류 : 없음

3. 교육내용

가. 교육과목 :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(2시간),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(2시간), 고용보험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(3시간),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(1시간)

나. 교육시간 : 09:30~18:30(8시간)

다. 교육대상 : 등록 세무사(사무장 및 직원 불가, 신분증 또는 세무사증 지참)

라. 교육비 : 무료(비회원은 56,000원 납부)

마. 교육일정

분	접수기간	교육일자	지방회	교육장소
1기 교육	2.27(월)~3.3(금)	3.30(목)	서울·중부	한국세무사회관
2기 교육	4.24(월)~4.28(금)	5.22(월)	서울·중부	한국세무사회관
3기 교육	7.31(월)~8.5(금)	9.5(화)	서울·중부	한국세무사회관
4기 교육	9.18(월)~9.22(금)	10.10(화)	대구	대구지방세무사회관
		10.13(금)	부산	부산지방세무사회관
		10.16(월)	광주	광주지방세무사회관
		10.17(화)	대전	대전지방세무사회관
		10.27(금)	서울·중부	한국세무사회관

바. 접수처 및 신청방법 :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**교육당일 접수불가**)

사. 교육운영

- 출결관리 방법 : 입실시 신분확인 및 온라인 출결입력 후 교육참석 확인증 수령, 퇴실 시 제출
- 교육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며, 교재는 교육 참석 회원에 한해 현장제공
- 인가교육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지정좌석제 운영
-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수 확인증이 교부되지 않으니 교육시간 엄수
- 교육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함
- 각 기수별 교육접수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 차기로 이월할 수 있음

아. 기타사항

- 세무법인의 경우 교육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신청 가능함
- 교육신청하시고 부득이하게 사정상 교육을 불참하시는 회원은 반드시 우리회 회원 서비스팀에 전화로(02-521-9457) 교육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(02-521-9457~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2월 16일

한국세무사회
회장 백운찬